

한국 발명환경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6)



박성웅

<동양라이트 대표>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저자의 승락을 받아 현재 하는 것임. <편집자 주>

목 차

- I. 서론
- II.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발명
- III. 한국의 발명현황과 특허제도
- IV. 한국발명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V. 결론

<고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전호에 이어 계속>

2. 한국의 특허제도

가. 한국의 특허제도와 특허관리

대한민국 특허법 제 1조는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⁴⁷⁾.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의 출원일의 다음날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을 보호 해주어 기술개발 의욕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공개하여 사용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사회 이익을 극대화 함에 목적이 있다. 개발된 기술이 특허법에 의한 권리 를 보호 받기 위한 기본법인 요건을 발명이 새롭고 진보성이 있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어야 한다. “새롭다”는 것은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사용된 사실이 없는 기술을 의미 하며 “진보성”이란 개발된 기술은 과거의 기술에 비해 향상된 기술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이란 발명의 대상이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혹은 생산 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하여 산업이란 공업 및 상업 뿐만 아니라 농수산업을 포함하여 광의로 해석되어 진다.

특허실시권은 특허로 등록된 발명을 이용한 물질의 생산 거래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의미 하며 특허권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즉 특허법에 의하여 지정된 특허권과 이외의 제 3자도 특허 실시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특허 실시권은 그 효력이 범위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된다. 전용실시권은 발명특허를 일정 범위 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상실시권이란 보통 실시권이라고도 하며

⁴⁷⁾ 산업기술진흥회, 산업기술주요 통계요람, 산업기술 진흥회, 1994, p. 162.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특허 발명의 실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⁴⁸⁾. 일부 경제학자들은 특허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특허제도가 발명가 개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기술의 배타적인 특허권 실시를 부여 함으로써 독점을 형성하여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과 불공정 거래를 유발시키고 또 이미 개발된 기술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여도 각자의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제 3자가 개발된 기술을 사용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정보교환과 기술습득 비용 이외에는 추가비용이 거의 없으므로 기술개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기술가격을 “O(ZERO)”로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특허는 특허제도라는 장치와 특허관리라는 수단의 활용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발명에 주력하고 새로운 발명이 탄생되었을 경우 특허요건의 총족 여부를 판단하고 출원 여부를 결정하며 발명의 권리화에 주력하여야 하며 특허권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면 침해가 아닌 권리의 이용에 치중하는 지혜로운 노력이 특정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 대책이 될 수 있다. 또 경쟁기업에 특허 감시에 역할을 두어 문제 있는 특허가 발견 될 때에는 그 특허의 유효성과 권리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라이센스계약을 하거나 설계변경등을 추진해야 하며 대체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특허문제는 단지 발명연구 뿐만 아니라 영업부문이나 경영문제 법률문제 등의 모든 조직과 팀워이 되어 관리해야만 효과가 있다. 특허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으로써는 당연한 일이며 그것이 곧 기업의 특허 관리이다. 특허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특허조사를 철저히 하며 특허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자사에 발명에 대한 특허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특허관리에 질적 향상은 유용한 인재의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허관리 담당자에게는 기술적 통찰력, 법률지식, 조정능력, 정보처리 능력이 요구되므로 계속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기업의 장래 성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핵심기술의 기본특허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으로는 발명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⁴⁹⁾. 후발 기술은 아무리 개량기술을 발명하여도 일정한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특허를 확보해야만 한다. 현재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은 기본특허 지향전략을 취하고 있다.

기본특허를 획득 한 후에는 성장상품 주력상품에 대한 수백건의 주변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인이 특허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가지고 있는 특허를 적극적으로 실시 허가하여 실시료를 많이 받는 방법도 있다. 또 기업간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교환사용 하는 방법과 발명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학술지나 기술잡지 등에 공개해 버리는 방법도 훌륭한 특허관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먼저 공개 해 버림으로서 공지된 기술로 만들어 버리면 특허를 얻지 않고도 특허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없어진다. 또 특허권을 실시허여할 때 자사의 브랜드(Brand)를 발탁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화하면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할 때는 비슷한 회사끼리 공동으로 연구하여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수의 특허권자가 단체를 설립하여 각각

48) 조상원, 전개서, p. 1797.

49) 김윤대, 월간 공업소유권, 한빛지적소유권 센타, 1987, p. 7.

관련특허를 모집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고도의 특허관리 전략으로 선두보다 2~3위가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하이테크 분야에는 기술의 혁신성이 높기 때문에 원리가 개발 되더라도 즉시 사용화 되기 어렵다.

기본특허는 조기에 권리화 되기 때문에 실지로 실용화 단계에는 권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소멸된 권리를 자기 사회에서 채택하여 응용하는 방법이 있고도 권리 소멸된 특허 중에서도 특허관리에는 공지된 기술을 가지고도 제품에 생산방법이 획기적일 때 생산 가격은 내려간다. 이러한 생산라인에 혁신에서도 발명특허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특허관리자는 알고 있어야 한다.

또 대학이나 국립 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기술 자료를 모아 놓고 필요에 따라 그 기술을 응용하게 하는 것도 특허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특허관리를 전담하는 한국 기업은 92년 1월 기준 664개사에 전담 요원수는 불과 1832명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화공 부문 업체들이 152개사로 전체의 22.9%로 가장 많고 전자, 전기기계, 순으로 설치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것은 물질특허 관련 업체의 특허업무 강화 및 첨단산업 분야의 특허관리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8〉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전담 요원수는 평균 2~3명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업종이 4명으로 나타났고 기계 업종은 3명으로 나타났다. 특허관리 전담 부서의 조직형태는 총무부(과) 기획실(부) 연구소 혹은 기술개발 관련 부서 내에서 2~4명의 요원으로 구성되어 부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허관련 업

<표-8> 산업체 관리 전담부서 설치현황 (92.1월)

업 종	업 체 수	요원수	업체당 평균요원수
종합상사, 무역업체	25	72	2.88
기 계	105	316	2.95
전 기, 전 자	118	470	3.98
화 공	152	378	2.49
약 무	50	108	2.16
석 유	48	119	2.48
금 속	41	100	2.44
건 설	8	15	1.88
식 품	45	104	2.31
잡 화	56	105	1.88
기 타	14	45	3.21
계	664	1,832	2.76

자료: 특허청, 특허관리 전담부서 설치업체 일람표(1992. p.31)

무를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연구개발실, 업무부, 종합연구소, 품질관리부, 기획실 등에 독립된 과 이상의 단위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불과 83개사로 전체의 12.5%이다. 기업 성격별로는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경향은 기업규모가 크고 매출액이 많은 회사 일수록 설치 비중이 높으며 연구개발체제가 확립되고 연구인력이 많고 연구개발투자액이 많을수록 특허관리 전담부서 설치비중이 많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기업들은 특허관리에 비중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향후 한국기업들은 특허관리 전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전담요원을 증가시켜야 하며 특허관리 전담부서도 최고 경영자 직속기관내에 독립기구로 승격시켜야 할 것이다.

나. 한국의 특허 활용 실태

특허의 경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상대

적으로 높아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신공정 설치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화 확률 사용자에의 적합성, 시장점유율 수요에 안전성, 시장개척력, 투자효율 등이 불확실하여 기업화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크다. 발명특허의 활용율은 <표 9>에서 보는 바와같이 특허가 35.7%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64.3%가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권리자별로는 개인은 26.4%만 활용하고 있으며 법인은 45.7%의 활용율을 보이고 있어서 개인발명의 경우가 법인 발명보다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더욱 많음을 알 수 있다. 권리자별 발명 활용율은 개인발명이 28.4% 법인발명이 45.7%이며 법인 발명중 기업발명은 46.4% 연구기관발명이 34.6%로 기업발명의 활용율이 가장 높다. 기업발명의 활용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업발명의 대부분이 연구개발 성과이며 연구개발 과제 선정시 사전에 발명의 상업성, 환경적 요소, 기술성, 경제성, 등의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구활동 수행과정 중에

도 여러 차례 검토 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가 나타나면 연구개발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즉각적인 발명의 기업화가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명의 활용율이 기업보다 연구기관이 낮은 것은 기초과학과 응용연구의 성격이 기업보다 강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또 다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는 선행 특허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개인발명의 활용율이 법인발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법인 발명은 사업을 목적으로한 발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개인발명의 경우는 단순히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로 발명을 한 것과 전문직업인이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산업에 속해 있는 개선점을 발견하고 연구에 임하는 사례가 많아 경제적인 관계로 발명을 해놓고도 사업성이 불확실하여 권리 허가 및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장발명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자신들이 발명한 것만 채택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발명한 것을 적극 실시하는 자세가 필요

<표 9> 특허권 권리자별 한국발명의 활용실태

활용여부 구 분	유효응답 발 명	활 용		미 활 용					
		독창적활용 활 용	타발명과 공동활용	활용중단	타발명에 참고자료	활용계획중	미활용		
특 허	546 (100)	195 (35.7)	158 (28.9)	37 (6.8)	351 (64.3)	51 (9.3)	45 (8.2)	171 (31.3)	84 (15.4)
개 인	466 (100)	123 (26.4)	113 (24.2)	10 (2.1)	343 (73.6)	44 (9.4)	18 (3.9)	180 (38.6)	101 (21.7)
	352 (100)	161 (45.7)	118 (33.5)	43 (12.2)	191 (54.3)	44 (12.5)	34 (9.7)	69 (19.6)	44 (12.5)
	326 (100)	152 (46.6)	112 (34.4)	40 (12.3)	174 (53.4)	41 (12.6)	32 (9.8)	61 (18.7)	40 (12.3)
	연 구 개 발	26 (100)	9 (34.6)	6 (23.1)	3 (11.5)	17 (65.4)	3 (11.5)	2 (7.7)	8 (30.8)

자료 :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국내기업의 공업소유권 활용실태, 1991, p. 112.

<표 10> 전체기업의 특허활용수준 평균치

구 분	기술개발 지원 및 특허 관리	발명장려 및 특허인수제고	정보 수립 활 용	출원조사 및 관리	권리보전 활 용	계
배점 A	24.02	16.23	26.55	18.00	15.50	100.00
평균치 B	13.22	7.29	12.15	6.63	5.97	45.26
득점을 B/A	55.0%	44.9%	46.3%	36.8%	38.5%	45.26

자료 : 산기협, 물질특허 제도도입의 인식 및 파급효과 조사분석 1991.

하며 이렇게 사용하는 발명에는 세계 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발명교육을 강화하여 실현 가능한 발명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전문가에게 제시하는 아이디어에도 충분히 보상금액을 지불해 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겠다. 국내기업들의 특허활용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이러한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항목을 사용 100점을 최고점으로 한 특허 활용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특허활용수준은 45.26점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출원조사 관리에는 36.8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권리의 존속과 포기, 등록후 포기율 권리의 실시정도, 자사권리의 침해 여부, 조사 실시료의 수리등 권리보전 및 활용측면에 있어서 38.5%로 극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계속>

2월중 본회가입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가입 년 · 월 · 일	대 표
한국가스안전공사	최 인 영	96. 2. 9.	
주 소		전 화 번 호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32-1		032)692-2341	

업 체 명	대 표 자	가입 년 · 월 · 일	대 표
(주)포스코홀스	이 행 부	96. 2. 8.	
주 소		전 화 번 호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27		0417)550-4114	

업 체 명	대 표 자	가입 년 · 월 · 일	대 표
참피온엔지니어링(주)	이 형 근	96. 2. 14.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시 광진구 능동 50-9		02)466-1365	